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불의의 사건이나 사고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등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정의로운 사회 인천을 실현하고,
- 국제도시로서 높은 시민의식 고취 필요로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에서 따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1 -

2. 주요내용

- 가. 이 조례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나.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의사상자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 특별위로금을 규정함.(안 제5조)
- 마. 의사상자 등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23, 팩스 032-440-8764, 이메일 hy010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인천광역시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라 함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자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이하 “의사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5.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

- 3 -

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2.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 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제4조(의사상자 지원사업)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법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3. 명절(설, 한가위)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4.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특별위로금 등 지원) ① 시장은 「법」에 따라 의사상자 예우 및 국가보상금의 지급 등 보호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특별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에 따른 의사상자 및 그 유가족이 다른 조례(자치구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 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한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3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의상자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시행령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1급, 2급 : 1천 500만원 이하
나. 3급, 4급 : 1천만원 이하

- 다. 5급, 6급 : 500만원 이하
- 라. 7급, 8급 : 200만원 이하
- 마. 9급 : 100만원 이하

제6조(예우 등) 시장은 「법」에 따른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승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예우
- 2. 시정 기록 및 홍보물 발간시 공적 게재
- 3.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신청) 법에 따른 의사상자 및 그 유가족으로 인정된 사람이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한 신청과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준용 등)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 법에 의해서 결정된 의사상자와 유족
및 가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다만, 제5조제2
항의 특별위로금은 조례 시행 후 법 제5조에 의한 인정시부터 적용
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련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개정 2011.8.4.>

1.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7 -

2. 자동차·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3. 천재지변, 수난(水難),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4.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5.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6. 해수욕장·하천·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2.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제4조(의사상자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4.1.28.>

1. 제5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인정 및 의사자의 부상등급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의사자의 부상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의사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사자가족의 예우에 관한 사항
 5. 의사자 및 의사자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사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부위원장과 그 밖의 위원은 이 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관련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인정신청 등) ①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 안

- 9 -

에서 구조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행위의 사실 여부 확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이하 "부상등급"이라 한다)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6조(부상등급 변경신청) ① 의사자가 그 구조행위로 인하여 입은 부상이 악화되어 제5조제5항에 따라 결정된 부상등급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상등급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2항 및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부상등급 변경의 신청절차 및 인정 여부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6조의2(이의신청) 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보건복지부장관의 결정에 이의(異議)가 있는 사람은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8.]

제7조(영전의 수여 등) 국가는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사회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상훈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전의 수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의2(기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사자를 추모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동상 및 비석 등의 기념물을 설치하는 기념사업(이하 이 조에서 "기념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29.]

제8조(보상금) ① 국가는 의사자 및 의사자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희생과 부상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지급액·지급방법이나 그 밖에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 ① 국가는 의사상자의 구조행위로 인하여 의사상자의 물건이 멸실·훼손된 때에는 의사자 또는 의사자유족에게 그 손해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보상금액은 그 물건의 교환가치 또는 필요한 수리비로 한다.

③ 제1항의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한다.

④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범위·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보상금 지급순위) 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은 의사자의 경우에는 그 본인에게, 의사자유족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 11 -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보상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② 태아는 제1항에 따른 지급 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의료급여) ① 의사자 및 의사자유족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사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는 의사상자가 구조행위를 한 때부터 실시한다. 이 경우 의료급여를 실시하기 전에 의사자 또는 의사자유족이 지급한 의료비의 반환금액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12조(교육보호) 의사자의 자녀 및 의사자와 그 자녀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정하는 교육급여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사자 및 그 자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취업보호) 의사자·의사자유족 및 의사자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사자 및 그 가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장제보호) 의사자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정하는 장제급여를 실시한다.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의사자·의사자유족 및 의사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8.4.]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1.8.4.>]

제16조(보호기관)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 및 장제보호의 실시는 관할 시·도지사

- 12 -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1.8.4.>]

제17조(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11.8.4.>]

제18조(신청기간의 제한)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 및 장제보호는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교육보호의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 당시에 교육보호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후에 교육보호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8.4.>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1.8.4.>]

제19조(보상금의 환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호기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또는 보호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가 받은 보상금 또는 보호에 사용된 비용을 환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호기관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할 사람이 그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18조에서 이동 <2011.8.4.>]

부칙 <제13659호, 2015.12.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관련조문(재정수반 요인)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 제2항에 따른 특별위로금 지급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방법

이 조례 시행에 따른 특별위로금 지급은 조례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의사상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게 됨에 따라 최근 5년 중 의사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2012년도와 가장 적게 발생한 2013년도 의사상자 수에 따른 최대 소요 비용 추계.

※ 참고: 2012년부터 2016년 11월 현재까지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정된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총수는 17명으로, 2012년도 9명(의사자), 2013년도에는 1명(의상자 4급)임.

나. 추계내역 (특별위로금 상한액 적용)

- 2012년 의사자 9명 × 3,000만원 = 2억 7,000만원
- 2013년 의상자 4급 1명 × 1,000만원 = 1,000만원

다. 추계 결과

최근 5년 기준 연도별 1,000만원 ~ 2억 7,000만원의 재정 소요

라. 재원조달 방안: 자체 재원

3. 작성자: 사회복지정책과장 유지상